금융위원회 / 금융감독원	보 도 자 료			대한민국 대전환 한국판뉴딜 / 내 삶을 바꾸는 규제혁신
	보도	**2022.1.17.(월) 조간**	배포	2022.1.14.(금)

책 임 자	금융위원회 FIU 제도운영과장 김 성 진(02-736-1750)	**담 당 자**	김 천 현 사무관 (02-736-1751)
	금융위원회 FIU 가상자산검사과장 이 동 욱(02-736-1740)		김 준 환 사무관 (02-736-1742)
	금융감독원 자금세탁방지실장 이 훈(02-3145-7500)		박 상 현 팀 장 (02-3145-7502)

제 목 : 효과적인 검사·감독을 통해 자금세탁 위험에 면밀히 대응해 나가겠습니다. ('22년 FIU 검사업무 운영방향)

◈ **한정된 검사자원을 전자금융·대부업자 등 신규·취약부문에 우선 집중**

◈ **상호금융중앙회 현장점검을 통해 위탁검사업무 역량 및 전문성 제고**

◈ **가상자산사업자 검사를 통해 자금세탁방지 체계 구축에 주력**

1 추진배경

□ '19년 이후 「특정금융정보법」 적용대상이 **전자금융업자·대부업자** 등으로 지속 확대되어 **FIU 검사대상*이 늘어나는** 가운데,

* 전자금융·대부업자('19.7월), P2P사업자('21.5월) 등

○ 금융거래의 디지털화, 자금세탁 범죄의 고도화·지능화 등에 따라 **새로운 유형의 자금세탁위험이 점증**하고 있습니다.

○ 아울러, 지난해 말 **가상자산사업자 신고수리**에 이어, 앞으로는 투명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**자금세탁방지 의무 이행**에 **감독 주안점**을 둘 필요가 있습니다.

➡ 자금세탁 리스크 변화에 대응하여 **한정된 검사자원**을 **효율적으로 배분·활용**하기 위해 '**검사업무 운영방향***'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.

* 우본(우체국), 관세청(환전업자) 등 위탁검사를 제외한 FIU·금감원 검사대상 기준

2 검사업무 운영방향

√ **신규·고위험 분야** 등에 대한 **FIU 직접검사 확대** (검사밀도 제고)
√ **검사수탁기관에 대한 현장점검**을 통해 **위탁검사업무 역량 강화**
√ 신규 업권인 **가상자산사업자**의 **올바른 자금세탁방지 체계** 구축

□1 **(신규·취약부문)** 자금세탁 위험평가 결과 등을 바탕으로 **신규 및 고위험 부문** 등에 **검사 역량을 집중**하겠습니다.

❶ **(전자금융·대부업자)** 자금세탁방지 의무부과 후 2년이 지난 **전자금융(124개사)·대부업자(60개사)**에 대한 **현장검사**를 실시하겠습니다.

- 이용자 수, 거래규모 등에 따른 **자금세탁 리스크에 비해 내부통제 수준이 낮은 회사** 등을 검사대상으로 선정하고,

- 금감원과 함께 **고객확인업무 이행**, **내부통제체계 구축**, **각종 보고업무**(STR·CTR 등)**의 적정성** 등을 중점 점검하겠습니다.

❷ **(카지노사업자)** 코로나 휴업 등으로 인해 잠정 중단되었던 **내륙 카지노사업자(9개사)***에 대한 검사를 재개**합니다.

* 제주도 소재 카지노사업자에 대한 검사는 제주도청에 위탁되어 있음

- 그간 **검사 실시내역**, **매출액** 등을 토대로 대상을 선정하되, 영업 제한상황 등을 보아가며 **검사를 탄력적으로 운영**하겠습니다.

❸ **(기획·테마검사)** 금감원을 통해 여러 업권 또는 다수 회사에 걸쳐 파악된 **공통 리스크 요인에 대한 검사**를 강화하겠습니다.

- FIU-금감원 간 신종 자금세탁 위험정보 등을 긴밀히 공유하고, 제한된 검사자원을 양적 검사확대 보다는 **리스크 요인별 대응***에 **보다 효과적으로 활용**하겠습니다.

* (예) 해외 자회사의 자금세탁 위험, 펌뱅킹 등을 활용한 자금세탁 위험평가 등

2 **(검사수탁기관)** 현장점검을 통해 **검사업무 운영의 적정성** 등을 점검하고, **위탁검사의 전문성·일관성을 제고**하겠습니다.

※ 「특정금융정보법(§15)」에 따라 상호금융중앙회(단위조합), 우본(우체국), 관세청(환전업자) 등에 자금세탁방지 검사업무 위탁

❶ **(상호금융중앙회*)** 검사대상 조합수, 검사·조치내역 등을 바탕으로 금년에는 **상호금융중앙회 중 현장점검** 대상을 선정하고,

* 상호금융기관의 중앙회: 농업협동조합중앙회,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, 신용협동조합중앙회, 산림조합중앙회, 새마을금고중앙회

- **검사 지적사항·조치기준, 검사대상 선정, 검사 전문인력 운영** 등 검사업무 전반의 적정성을 점검한 후 **필요한 부문은 개선을 권고**할 계획입니다.

❷ **(단위조합·우체국 등)** 검사수탁기관과 협의를 거쳐 고위험·취약 검사대상 등*에 대해서는 **FIU가 공동으로 검사에 참여**하겠습니다.

* (예) 이용자 수 대비 자산규모가 큰 회사, 반복적 검사 지적사항 제기 회사 등

3 **(가상자산사업자)** 신규 업권의 **투명한 거래질서 확립**을 위해 **사업자 검사**를 하여 **자금세탁방지 체계 구축**에 중점을 두겠습니다.

❶ **(종합검사)** **신고 사업자**를 대상으로 특정금융정보법상 **자금세탁방지체계 구축 상황**을 **점검**하겠습니다.

- **신고심사 과정**에서 제기된 **개선·보완사항의 이행 여부**를 우선 점검하고, 시행 초기 **고객확인의무, 자금세탁방지 시스템**이 올바르게 이행·정착되는지 살펴볼 예정입니다.

- 검사 필요성에 따라 **원화마켓 사업자**부터 **순차적으로 진행**하며, 자금세탁 문제가 발생할 경우 **수시검사를 실시**할 계획입니다.

❷ **(부문검사)** **요주의 사업자**를 대상으로 **실제 자금세탁방지 운영 상황을 중점 점검**하겠습니다.

- 대상 사업자는 **종합검사 결과**에 따라 하반기에 선정하며, 신고 이후 **의심거래보고, 트래블룰 이행 적정성** 등을 살필 계획입니다.

3 향후 계획

□ 추후 관계기관 논의, **검사계획 구체화** 등을 거쳐 **자금세탁방지 검사를 차질없이 추진**해 나가겠습니다.

○ **(1월말)** 유보된 **가상자산사업자의 재심사**를 통해 금년 검사대상을 확정하고, **사업자 실태점검**(서면)을 통해 **세부 검사계획 마련**

○ **(2월 중)** '검사수탁기관 협의회' 등을 거쳐 상호금융중앙회, 우본 등에 **위탁된 자금세탁방지 검사업무 추진방향***도 마련

* [주요내용(안)] 자금세탁방지 전문검사 비중 확대, 검사수탁기관 검사원의 전문성 제고, 위험평가를 반영한 검사대상 선정 등

○ **(2월 ~)** 가상자산사업자, 금융회사·카지노사업자·상호금융중앙회 등 FIU·금감원 검사대상에 대한 **현장검사 착수**

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
☞ 본 자료를 인용 보도할 경우 출처를 표기해 주십시오.
http://www.fsc.go.kr

금융위원회 대 변 인
prfsc@korea.kr

1339 질병관리청 콜센터

"혁신금융, 더 많은 기회 함께하는 성장"